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7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2. 26.
3. 회 부 일 : 2026. 0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빈곤아동 지원 범위에 주거 포함 및 추진 체계 강화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정의·책무 등에 ‘주거’를 명시하고, 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관련 계획과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7조,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 <u>보건의료</u>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보건의료</u> · <u>주거</u> ----- ----- -----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u>보건의료</u> ·교육·문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보건의료</u> · <u>주거</u> -----

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복지·보건의료·교육
·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
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
·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
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보건의료·주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보건의료·주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아동의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신설>

<신설>

-----보건의료·주거

1. -----보건의료·주거-----

2. ~ 4.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신 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매
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에 제출한 사항과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7명-----

-----.
② -----
-----.
1. -----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 평등가족부장관, <u>기획예산처</u> <u>장관</u>	----- ----- <u>기획예산처</u> <u>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u> <u>데이터처장</u>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보건
의료·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한 아동¹⁾을 의미함(법 제3조제3호).

○ 빈곤아동의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등을 말함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 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1) 이 법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법 제3조제1호).

□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 나아가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 4. (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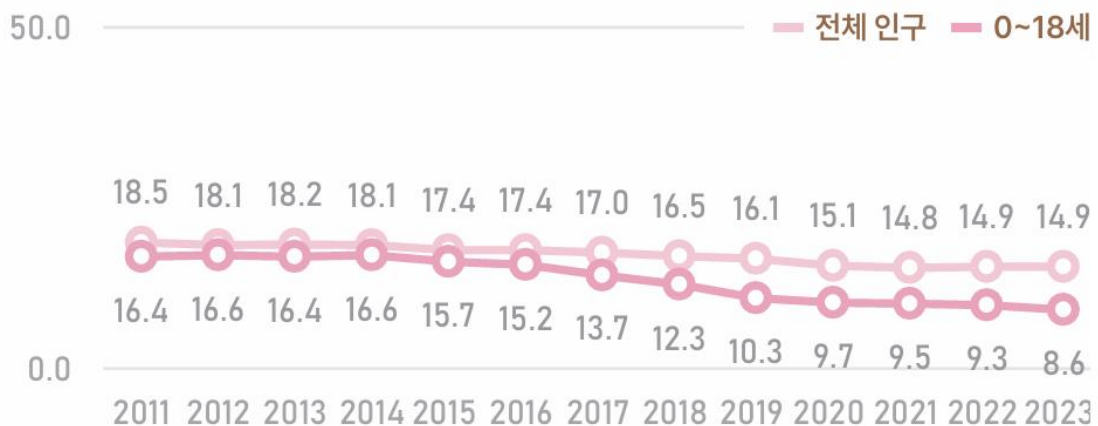
□ 2025년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²⁾은 2014년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4년 기준 16.6%였으나 2020년부터는 1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8.6%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나아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0년 이후 정체된 반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2011 ~ 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2025. 10, p.35.(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주1: 상대적빈곤선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임

주2: 연도는 소득 기준연도임(즉, 2023년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임)

2) 상대적 빈곤율이란 가구 소득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 참고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임.

○ 2022년 기준, 핀란드나 덴마크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5% 미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음. 프랑스(11.2%)나 일본(11.5%) 등은 우리보다 다소 높으며 영국(13.6%)이나 미국(20.8%)은 우리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OECD 회원국의 아동 상대적 빈곤율(2022)>

(단위: %)

순위	국가	빈곤율(%)	순위	국가	빈곤율(%)
1	핀란드	3.8	20	오스트리아	11.7
2	덴마크	4.2	21	스위스	11.7
3	슬로베니아	5	22	캐나다	12.5
4	아이슬란드	5.4	23	그리스	13
5	노르웨이	7	24	호주	13.3
6	벨기에	7.6	25	영국	13.6
7	아일랜드	7.9	26	뉴질랜드	13.9
8	폴란드	8	27	이탈리아	14
9	체코	8.5	28	포르투갈	14.3
10	스웨덴	8.5	29	슬로바키아	14.5
11	네덜란드	9.2	30	헝가리	15.4
12	한국	9.5	31	멕시코	19.1
13	에스토니아	9.9	32	칠레	20.5
14	룩셈부르크	10.4	33	튀르키예	20.6
15	라트비아	10.5	34	스페인	20.7
16	독일	11.1	35	미국	20.8
17	프랑스	11.2	36	이스라엘	22
18	리투아니아	11.3	37	코스타리카	28.5
19	일본	11.5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2025. 10, p.35.(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5. 8.))

주1: 분석대상은 0~17세임.

주2: 2022년 기준이며, 2017년(아이슬란드), 2020년(호주), 2021년(독일, 일본) 수치가 포함됨.

□ 아동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³⁾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7년(4.4%)부터 2022년(1.9%)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2.2%로 상승하였음.

<아동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비율(2017~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2025. 10, p.38(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주: 아동·청소년 가구는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임

□ 그런데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최소한의 주거 보장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3) 참고로 최저주거기준은 시설기준과 침실 및 면적기준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1. 5. 27.)	
○ 시설기준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 1인 가구(방1개와 14㎡), 2인 가구(방1개, 26㎡), 3인가구(방2개, 36㎡), 4인가구(방3개, 43㎡), 5인가구(방3개, 46㎡), 6인가구(방4개, 55㎡)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아동빈곤정책의 범위에 ‘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와 관련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통해 빈곤아동 정책에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본계획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로는 「청소년 기본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 나아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주거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계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도모하며 복지과 주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주거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급여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과 별도로 빈곤아동 등 각 취약계층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마다 주거 정책을 병기할 경우에는 법체계상 중복을 초래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나아가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명	내용	소관부처
주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 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 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의 목적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아동정책 관련 전반 내용을 포괄하고자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아동복지법」의 일부로 흡수·재편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